

영등포구의회
제134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2008. 1. 28.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 우리 구 도시이미지를 고품격 디자인 도시로 변화, 발전시키기 위한 도시디자인 전담부서의 신설 및 부서별 업무재조정 등으로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조직을 구성하고자하는 개정 내용임

■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

■ 주요 개정내용

< 부서 신설 >

- 도시디자인과 - 4개팀

디자인기획팀 · 공공디자인팀 · 광고물디자인팀 · 광고물개선팀

< 부서 소속 변경 >

- 청소과 : 도시환경국에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 국별 업무량 조정

< 팀 신 설 >

- 공공디자인팀

< 팀 이 관 >

- 디자인기획팀(8명) : 도시경관과에서 이관
- 광고물디자인팀(5명) : 가로경관과에서 이관
- 광고물개선팀(10명) : 가로경관과에서 이관
- 보 상 팀 (5명) : 도로과에서 가로경관과로 이관

※ 참고사항

가. 법적근거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따로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관련부서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부서·팀 신설 및 이관 현황 : 따로붙임
- 2) 입법예고 : 2008. 1. 11 ~ 1. 15
-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부서를 신설하여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인 고객위주로 다가서며, 유사기능 업무를 이관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구정을 구현하여 경쟁력을 갖춘 조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도시디자인과와 공공디자인팀을 신설하면, 5국 1단 3담당관 24과 181팀에서, 5국 1단 3담당관 25과 182팀으로 1개과와 1개팀이 늘어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자치부가 산정한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인건비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그 범위내에서 과 단위 이하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종전 표준정원제하의 시·군·구 5급 이상 정원 책정과 한시정원 책정 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며,

-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므로 분산되어 있는 공공디자인 및 도시미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청소과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관하고 도로과 보상팀을 가로경관과로 이관 통합 운영함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 질 수 있다고 판단되나, 잦은 과, 팀 신설 또는 이관으로 대민업무 처리에 혼선을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므로 주민 및 관련부서, 유관기관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 1.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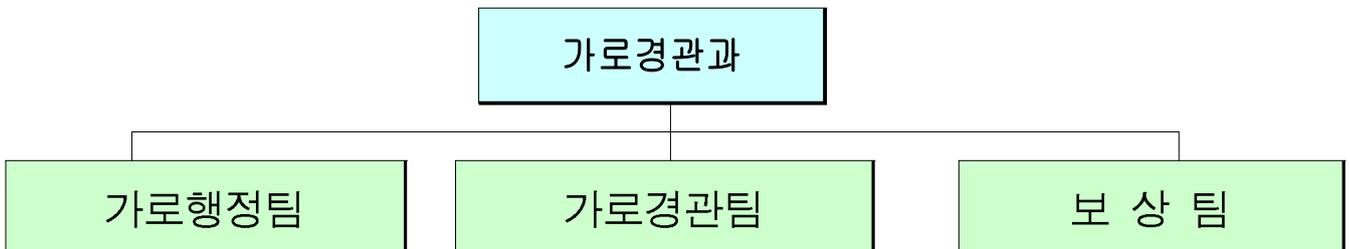
보 고 자 : 김 병 옥

부서 · 팀 신설 및 이관 현황

도시디자인과 기구 현황



가로경관과 기구 현황



도로과 기구 현황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④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⑤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⑥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 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장관이 임명한다.<개정2006.4.28>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제6조(생략)	제1조~제6조(생략)
제7조(주민생활지원국) ①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u>가정복지과 및 문화체육과</u> 를 둔다. ② (생략). 1. ~ 10.(생략)	제7조(주민생활지원국) ①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u>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및 청소과</u> 를 둔다. ② (생략). 1. ~ 10.(생략)
	<신설> 11. <u>청소대행업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u>
	<신설> 12. <u>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와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u>
	<신설> 13. <u>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사항</u>
	<신설> 14. <u>정화조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u>
제8조(도시환경국)① 도시환경국에 도시경관과, <u>청소과</u> , 건축과, 공원녹지과 및 맑은환경과를 둔다. ② (생략) 1. ~ 3.(생략) 4. <u>청소대행업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u> 5. <u>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와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u> 6. <u>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사항</u> 7. ~ 11. (생략) 12. <u>정화조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u>	제8조(도시환경국)① 도시환경국에 도시경관과, <u>도시디자인과</u> , 건축과, 공원녹지과 및 맑은환경과를 둔다. ② (생략) 1. ~ 3.(생략) 4. <u>영등포디자인 개선 및 정체성 확립에 관한 사항</u> 5. <u>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u> 6. <u>공공시설물 디자인 계획 및 개선에 관한 사항</u> 7. ~ 11. (생략) 12. <u>디자인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u>

현행	개정안
<p>13. (생략)</p> <p><신설> <신설> <신설></p> <p>제9조(건설교통국)</p> <p>① (생략)</p> <p>② (생략)</p> <p>1. ~ 2. (생략)</p> <p>3. 옥외광고물 관리 등 가로경관에 관한 사항</p> <p>4. ~ 17. (생략)</p>	<p>13. (생략)</p> <p>14. 옥외광고물 관리 등 가로경관에 관한 사항</p> <p>15. 옥외광고물 관리에 따른 변상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p> <p>제9조(건설교통국)</p> <p>① (생략)</p> <p>② (생략)</p> <p>1. ~ 2. (생략)</p> <p><삭제></p> <p>3. ~ 16. (생략)</p>